

Ⅲ. 주요국의 기업휴지보험 운영현황

1. 미 국

가. 시장개요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은 1880년 Dalton대리점이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에 들어 총수익방식이 도입되어 영국식 이익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상품으로 발전하였다. 현재와 같은 기업휴지보험 상품으로의 발전은 1986년에 미국 최대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인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표준적인 기업이익보험(business income insurance)을 개발하여 보급하면서 부터이다.

미국에서 현재 기업휴지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은 독립된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사업자 종합보험(business owner's policy), 상업용 재물보험(commercial property policy)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상업재물보험은 비교적 영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이며, 사업자 종합보험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품체계로 되어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휴지를 담보하고 있는 보험종목의 실적을 보면 단순한 화재보험이나 화재계열(fire allied lines)보험은 매년 1.1% 감소하여 전체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자종합보험과 상업재물보험이 속한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multiple peril insurance)은 매년 5%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손해보험은 화재와 같은 단일위험담보 보험시장보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화 된 시장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종합보험화 된 보험시장이 미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I-1> 미국 기업휴지담보종목의 보유보험료 실적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종 목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CAGR
자동차보험	176,763	184,352	186,383	187,098	41.8	1.91
화재보험	16,550	14,035	13,882	15,954	3.6	-1.22
해상보험	12,077	12,947	13,184	14,338	3.2	5.89
상업종합	27,430	29,074	29,695	31,848	7.1	5.10
산재보험	32,919	36,734	39,724	41,825	9.3	8.31
배상책임	38,875	43,153	42,924	45,843	10.2	5.65
보증 기타	102,902	105,446	101,833	110,855	24.8	2.51
합 계	407,516	425,741	427,625	447,761	100.0	3.19

자료 : III(2008),pp.46-47에서 종목별 합계를 하였다.

나. 보험상품

1) 기업휴지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기업휴지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는 사업의 중단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순이익의 감소분과 그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사업을 복구하는데 요구되는 정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extra expense), 정부가 재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으로서의 접근을 거부하는 공권력(civil authority), 건물의 변경과 신축(alternations and new buildings), 확장된 사업수입(extended business income) 등의 네 가지 추가위험담보와 신규취득 영역(newly acquired locations)의 한 가지 확장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추가 위험담보의 내용 중 추가비용(extra expense)이 Business Income(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에서는 사업수입손실을 감소시키는 비용(expenses to reduce loss)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BI의 두 가지 양식에서 추가담보와 확장담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Business Income Coverage Form(BIC)에서는 담보된 건물의 외부에서 일어나

는 원인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off-premise service interruption), 완성품(finished stock)의 파괴에서 오는 손실, 라디오나 텔레비전 안테나(antenna)의 파손에서 오는 피해, 사업의 복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업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복구의 지연(delay)으로 인한 손실, 복구의 기간 후 일어나는 계약, 리스, 면허 등의 취소와 같은 회사의 특권의 감소(loss of privilege)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 인한 손실 등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사업 손실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other consequential losses)이 된다면 이는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보험상품

가) 기업휴지보험

기업휴지보험은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에 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실(actual loss of business income)과 특별비용(extra expense)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이익의 손실액은 사고로 인한 휴업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세전 순이익(Net income)과 사업 중단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continuing normal expenses)이 해당된다. 고정비용에는 급여가 포함되지만 종업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와 부서장과 계약직원의 임금 등은 제외된다. 대부분의 기업휴지보험(BI) 상품은 사업수입 손실(business income loss)과 추가비용(extra expense)이 사업수입의 손실을 줄이지 않더라도 추가비용의 손실을 보상하는 Business Income(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과 사업수입 손실과 추가비용이 사업수입손실을 감소시키는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보상하는 Business Income(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의 두 가지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 양식 중 하나의 형태로 공급된다.

미국에서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BI Worksheet를 통해 기업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트래블러사(Travelers)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가입금액을 산업별로 약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퍼센트(benchmark percent)를 제시

하고 있다. 기준 퍼센트는 연간수익액(total annual revenue)에서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하는 비율로, 이에 의하면 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의 48%, 병원·간병시설은 85%를 기업휴지보험의 가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표 III-2> 미국 트래블러사의 기업휴지 벤치마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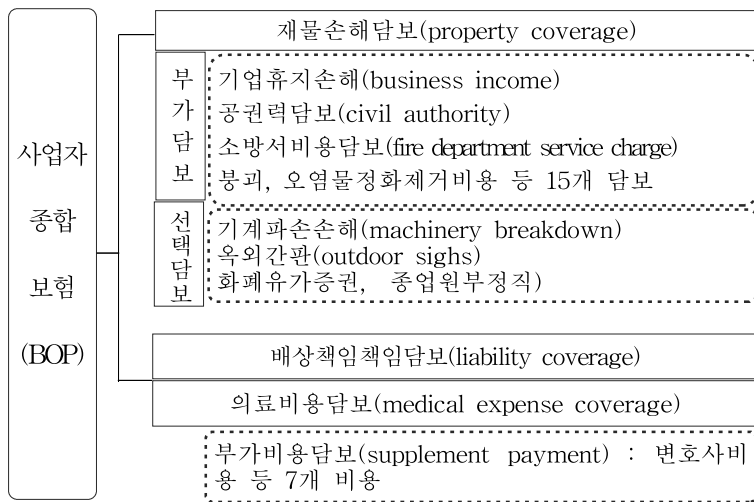
제 조 업		비 제 조 업	
의류	48	수선업	50
컴퓨터 및 전자	63	예술 레크레이션, 카지노	80
전기장치	69	건물재료 및 가든 시설	45
금속제품	49	음식료업	60
식품업	49	교육서비스업	80
가구업	49	가구업	57
기계류	54	상품가게	41
광물업	49	건강 개인간병 가게	32
자동차산업	38	병원요양시설	85
제지업	49	자동차딜러	23
플라스틱 및 고무업	44	인쇄업	75
인쇄업	59	스포츠상품	53
방직업	42	기타	30-35
양조업	68		
목재업	41		
기타업	40-50		

나) 사업자 종합보험

사업자 종합보험(BOP : Business Owners policy)은 개별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이 아니라 1976년에 ISO가 개발한 보다 경쟁적인 상품이다. 그 후에는 미국보험서비스협회(AAIS)도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개별 회사들도 이들 요율산출서비스기관이 제공한 상품을 기초로하여 변형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은 단일위험을 제공하는 한계를 넘어 종합담보(all

risk package policy)방식으로 개발한 상품 중의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는 가정종합보험(Homeowners Policy), 사업자종합보험(BOP),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Property Policy), 농장종합보험(Farm owners policy) 등이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의 담보위험은 재산손해와 사업체 경영상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데 이를 표시한 것이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사업자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자료 : Fliter · Trupin(2004), chapter 11에서 정리하였음.

사업자종합보험의 가입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small sized business)이나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 보험을 소기업종합보험(small business owners policy)이라고도 하며, 또 이들 보험의 가입기업체들이 주로 중요도로(main street)옆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체라는 점에서 “중요도로 기업체 보험(main street business insurance)”이라고도 부르고 있다⁹⁾.

사업자종합보험의 가입대상 목적물은 건축물의 이용형태(아파트, 사무실) 또는 건축물의 외형(높이, 바닥면적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가입대

9) Gerge Krauss, *Businessowners Policy manual; Student Workbook*, INVEST, 2004, p.1

상 목적물은 용도측면에서는 소매상, 도매상, 서비스업체, 건축 중인 건물이나 개인동산, 아파트나 콘도건물, 사무실건물(6층 이하, 바닥면적 10만 평방피트 이하), 제빵업, 장례업, 도색업, 수선업 등과 같은 상업/서비스/가공업체(총 바닥면적 25000평방피트이하 혹은 연간매출액 300만 달러 이하), 3층 이하로 바나 라운지가 없는 모텔, 계약 서비스업(목수서비스, 전기수리업, 도색업, 배관공), 주유 서비스매출이 연매출의 75%미만인 편의점으로 자동차수리서비스, 레스토랑이 없는 경우, 레스토랑(카페, 샌드위치가게, 약국, 피자가게 등)으로 패스트푸드의 바닥면적이 7500평방피트이하인 경우, 세탁소, 소매매출액의 25%이하인 도매업으로 총 바닥면적의 25%이상이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외의 건물은 모두 상업용 종합보험(CPP)의 대상이 된다.

동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체로는 자동차사업, 바 등 대규모 레스토랑, 제조업체, 유흥장소, 금융기관 등이 있다¹⁰⁾. 사업자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담보는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위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기업휴지손해는 재물손해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형태(additional coverage)를 띠고 있어 부가적인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본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의 담보방식은 열거위험양식(named-perils form)과 특별양식(special form)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3 > 사업자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Special Form
담보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붕괴, 화산활동, 재물의 운송 위험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 extra expense), 연기/증기/가스, 증기장기, 냉동배관, 부정직, 붕괴, 오염, 마모/녹/부식 등 위험, 기상조건 등
면책 사항	법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 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damage)	

10) Flitner · Trupin, *Commercial Insurance*, AICPU, August 2004, pp.11.4-11.6

사업체 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기업휴지손해는 순이익의 감소액과 임금 등의 경상비지출액이다. 보상기간은 담보한 재물의 사고(covered cause of loss)가 발생한 이후 72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파손된 재물이 교체되고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금 지급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이며 통상적으로 12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통상급여의 담보(ordinary payroll)는 60일을 한도로 한다. 동 보험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초기에는 정상적인 영업성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로 인한 사업재개 후 30일 동안에 기업휴업손실까지도 확장하여 담보하는 조항(extended business interruption cover)을 두고 있다.

특별비용담보(extra expense cover)는 담보사고 이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데 이를 특별비용이라 한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리스하거나, 전화 등 통신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비용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72시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상업 종합보험

상업 종합보험(Commercial Package Policy)은 사업자종합보험과 같이 재산손해를 기본 담보 축으로 하고 배상책임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하는 패키지보험으로 기업휴지보험을 담보한다. 다만, 사업자종합보험과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큰 대규모 상공업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보험의 담보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영업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내륙운송보험(Inland Marine), 범죄보험(Crime), 보일러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과 농업보험 (Farm insurance), 사업용 자동차보험(Commercial Automobile) 등 사업자에게 노출된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동 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담보는 별도의 약관(Business Income Coverage

Form)이 첨부되어야 하며, 기업휴지손실(business income)과 특별비용(extra expense)을 합해서 담보하는 방식(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과 특별비용을 빼고 담보하는 방식(business income without extra expense coverage form)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III-2> 미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담보체계

상업 종합 보험 (CPP)	재물손해담보(commercial property coverage form)
	기업휴지손해담보(business income coverage form)
	상업일반배상책임담보(CGL coverage form)
	도난손해담보(crime coverage form)
	기계장치보장담보(equipment breakdown protection coverage)
	내륙운송보험담보(inland marine coverage form)
	자동차담보(auto coverage form)
	농장보장(farm coverage form)

상업종합보험에서 기업휴지손해의 담보위험은 재물손해의 담보위험(causes of loss)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든가 아니면 특정 위험만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형태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기본담보 양식(basic form)에서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자동차로부터 낙하물, 폭동/소요(riot or civil commotion), 악행(vandalism), 스프링클러 누출, 싱크 홀의 붕괴, 화산활동(volcanic action)을 담보하며 확장 담보 양식(broad form)에서는 이외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falling objects), 설재(weight of snow, ice or sleet), 침수손해(water damage), 다른 원인에 의한 붕괴(collapse such as hidden decay) 등을 담보한다. 특별담보 양식(special form)에서는 면책사항 외의 모든 손해를 담보하며 운송중인 개인재산손해(personal property in transit)와 유리파손을 추가로 담보한다.

<표 III-4> 상업종합보험의 재산손해 담보위험(BI담보위험)

구 분	Basic Form	Broad Form	Special Form
담보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폭풍/해일, 연기, 항공기/자동차, 폭동/소요, 악행, 스프링클러누출, 싱크홀 붕괴, 화산활동	-Basic Form의 담보위험 -낙하물, 설재, 침수손, 다른 붕괴	면책사항외 모든 담보, 운송중인 개인재산, 유리파손
면책 사항	범집행/정부기관 행위, 지진, 핵위험, 구외유틸리티서비스, 전쟁군사행동, 수손(water)		

자료 : Dearborn Financial Institute(2001), p.328

상업종합보험의 약관은 기업휴지손해 담보(business income and extra expense coverage form)를 두고 있는데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직접적인 재물손해(direct physical loss)가 발생해 사업의 중단이 발생해야 한다. 상업용 종합보험의 기업휴지손해의 담보 체계는 사업체 종합보험과 같이 세전 기업이익의 상실손해와 계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를 기본적으로 담보하며, 기간 확장담보조항과 특별비용담보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공동보험비율(co-insurance)을 50%에서부터 12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선택조항(optional coverage)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조항은 최대 보상기간을 120일로 하여 공동보험비율을 약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보상한도를 공동보험비율 없이 월간한도(monthly limit of indemnity)를 연속해서 30일 한도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액을 약정하는 방식(business income agreed value)도 가능하다.

특별비용담보는 사업자종합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간접기업휴지보험을 별도로 첨부하여 담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보험활용

미국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업의 기업휴지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통계는 조사기관이나 조사목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해에 따른 사업

계속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기업은 43%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9%는 2년이 지나야 사업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9일 이상동안 데이터센터에 손상을 받은 기업의 93%는 재해 후 1년 이내에 파산하며, 9일 이상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의 50%는 바로 파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이와 같이 재해 후 발생하는 간접손해인 기업휴지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의 활용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3년 Safeco사가 미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을 조사¹²⁾한 결과에 의하면 화재 등의 사고이후의 경상비용이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즉, 전체 중소기업의 45%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휴지의 원인으로는 전력시설 72%, 컴퓨터H/W 52%, 통신수단실패 46%, S/W문제 43%, 인적실수 34%, 낙뢰 34%, 홍수 17%, 화재 14%, 허리케인 12%로 나타났고, 허리케인 앤드류가 상륙했을 당시 플로리다주 기업의 75%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기업휴지보험 시장도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¹³⁾.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재해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속성관리(B C M)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이의 관리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911 WTC테러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지진, 테러 등과 같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여 경영활동이 중단될 경우 중요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하게 복구시켜 기업의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1년 911 테러의 경험은 테러 이전에 각 조직 단위로 실행되던 미국의 개별적인 재해관리 체제를 정부기관, 사업체, 자원봉사 조직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직들이 동시에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관리체제로 변화하게 하였다¹⁴⁾.

11) http://www.premierinc.com/safety/topics/disaster_readiness/downloads/cpac-bus-survive.pdf

12) [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Safeco Survey Finds Small-Business Owners Ill-Prepared When Disaster Strikes\)](http://www.insurancejournal.com/news/west/2003/10/22/33403.htm?print=1(Safeco%20Survey%20Finds%20Small-Business%20Owners%20Ill-Prepared%20When%20Disaster%20Strikes))

13) <http://www.keenansuggs.com/Insurance%20Updates/Commercial%202007/June%202007,%20Business%20Interruption%20Ins.pdf>

14) 또한 사베인즈-옥슬리 법 404항(Sarbanes-Oxley Section 404)은 기업에게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에 대해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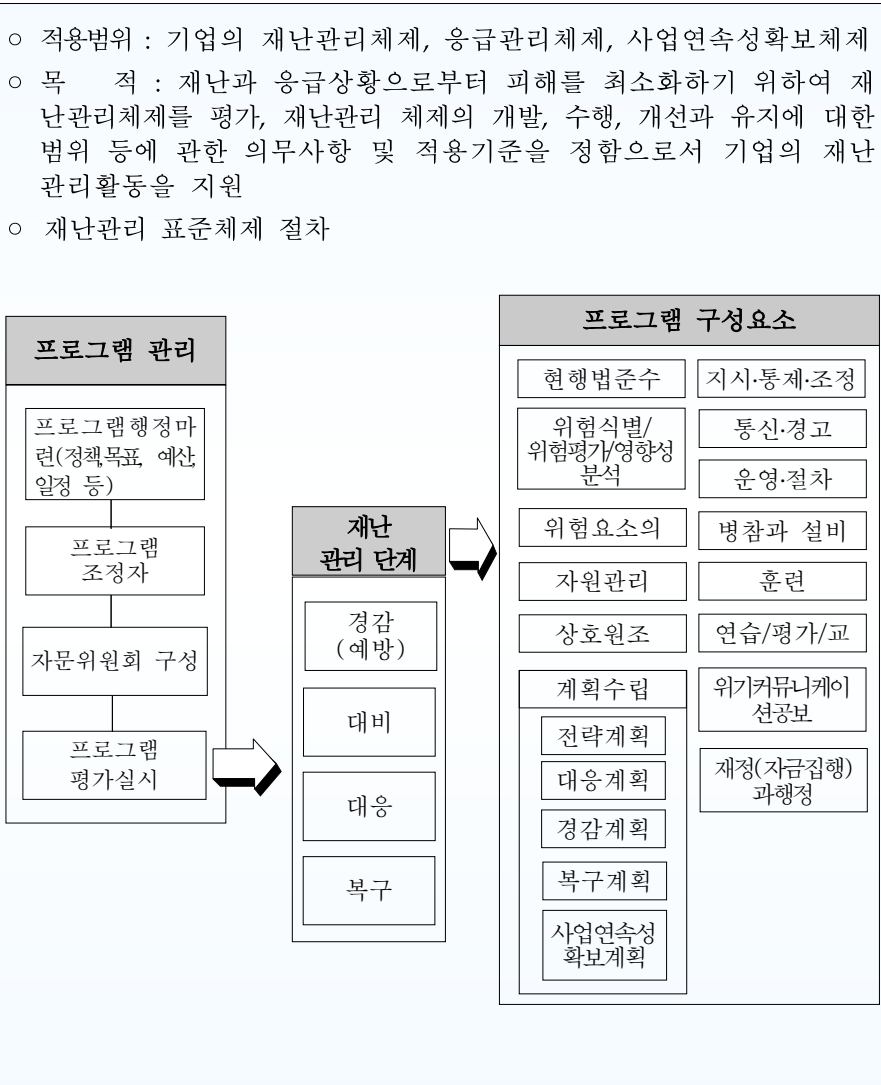
미국에서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BCP) 프로그램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2001년 9.11 테러를 전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11 테러 이전에는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규정이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 소방방재협회(NFPA)와 식약청(FDA) 등 여러 기관은 해당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사업연속성계획 프로그램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구인 재해회복위원회(DRII: Disaster Recovery Institute International) 및 재해회복저널(DRJ: Disaster Recovery Journal)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기업표준지침(GAP : Generally Accepted Practice for Business Continuity)"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GAP은 각 주제별 영역(subject matter area)의 소주제(sub-topic) 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What),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수행해야 하는지(How)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기존 문서나 자료 등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통해 실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지침을 해석, 적용 할 때 적절히 참고, 활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뉴욕증권 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의 "Regulation 446"과 미국 유가증권딜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의 "Regulation 3510"은 모든 회원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IEC :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사업연속성확보계획의 수립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으며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재난에 대한 연속성관리계획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위기관리계획(Crisis management plan)의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표준인 NFPA 1600(Standard on Disaster/Emergency Management and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2007)¹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http://www.nfpa.org/assets/files/pdf/nfpa1600.pdf>

<표 III-5> 미국 NFPA 1600(재난관리 및 사업연속성 표준)의 개요



자료 : 국회 재해경감지원법 검토보고서, 2006.9 ,p.14

2. 영 국

가. 시장개요

화재보험이 1666년 9월 2일에 발생한 런던 대화재로 인하여 세계최초로 영국에서 개발되었듯이 기업휴지보험도 1797년에 Minerva Universal회사가 결과적 비용 및 이익손해(consequential loss)를 담보하는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99년에는 Ludovig McLellan사가 영국판 기업휴지보험의 효시인 이익보험(loss of profit)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1939년에 현대적인 기업휴지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짐에 따라 영국식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식 기업휴지보험과 더불어 기업휴지보험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은 화재보험의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을 첨부한 형태와 상업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 상업용 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2007년 Hiscox사가 영국 중소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중소기업의 44%는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30%는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까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경우 영국에서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휴지보험에 대해 세부적인 통계자료가 공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자세한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상업용 재산보험에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재산보험에 대한 실적통계를 통해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상업용 재산보험을 비롯한 재물보험은 영국 손해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34%에 비해 약간 적은 2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6) 영국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관련 보험의 가입율을 보면 공공배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80%, 사무실동산컴퓨터 보험 66%, 사용자배상책임(EL) 66%, 전문인배상 59%, 건물보험 58%, 자동차보험 52%, 법률비용보험 46%, 건강보험 28%,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 여행보험 22%, D&O보험 15%로 조사되었다.<http://www.hiscox.com>(Press Release, Under-insured SMEs face to significant financial risk from employee lawsuits, 2007.2.17)

<표 III-6> 영국 재물보험의 보유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종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CAGR
자동차	9,531	10,154	10,397	10,277	10,527	33.6	0.90
상해건강	3,894	4,140	4,089	4,385	4,664	14.9	3.02
재물보험	8,015	8,494	8,547	8,487	8,609	27.5	0.34
배상책임	3,173	3,252	3,532	3,273	3,353	10.7	0.77
금전손실	3,462	3,562	4,043	3,999	4,166	13.3	3.99
TOTAL	28,075	29,603	30,607	30,420	31,319	100.0	1.42

자료: http://www.abi.org.uk/Display/File/524/Public_General_Business_Tables_2007.xls

나. 보험상품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미국의 보험과 같이 국제 표준형태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총이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적으로 영국의 기업휴지보험은 다른 나라들처럼 패키지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다. 영국에서 패키지 형태의 종합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으로 통칭되나 회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업종합보험(CCP: commercial combined insurance)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상업종합보험(commercial combined policy)은¹⁷⁾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자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비용으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물리적 피해, 경영중단 손해 등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사업의 연속성을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으로 계약자의 니즈에 따라 표준화된 약관과 달리 다양한 담보위험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보험 상품(Tilor-made cover)으로 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도소매업자를 주요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보험은 모든 담보위험에 적용되는 면책사항(general policy exclusion)으로 방사능오염(radioactive contamination), 전쟁 및 이와 유사한 리스크(war and similar risks), 폭음(sonic bang), 몰수, 테러위험을 두고 있다.

17) www.ruralinsurance.co.uk

상업종합보험(CCP)에서 재물손해는 화재보험의 기본담보 위험외의 특약담보위험을 대부분 담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손인으로는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노동쟁의 및 소요, 악행손해(malicious damage), 지진 및 지하화재, 폭풍, 홍수, 물의 피난, 제3자 및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나 동물로 인한 피해, 우연한 물리적 손해, 침강 또는 수평전위(subsidence or heave) 등이 있다. 그러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 우연한 오염사고, 고정된 유리의 우연한 손해, 도난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물손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약조건(policy condition)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85% 실손보상 조건, 방화문 및 방화샤터조건, 스프링클러장치 유지 테스트 조건, 소화기와 경보설비 유지 및 테스트조건, 보안보호조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III-3>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기업휴지 담보

상업 종합 보험 (CCP)	재물손해담보(material damage cover)
	기업휴지손해담보(business interruption cover)
	도난손해담보(theft cover)
	사용자배상책임담보(employers' liability cover)
	공공 및 생산물배상책임담보(public and products liability)
	유리담보(glass cover)
	돈 담보(money cover)
	운송중 화물담보(goods in transit cover)
	냉동식품 담보(frozen food cover)
고용인의 도둑담보(theft by employee cover)	

자료 : Royal Insurance(www.ruralinsurance.co.uk)

영국 상업 종합보험(CCP)의 기업휴지담보는 부보한 재물에서 담보하는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순이익의 감소를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기업휴지에서 담보하는 손인은 재물손해와 거의 동일하지만 도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휴지보험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상업용 종합보험의 기업휴지위험담보는 가입휴지손해

를 133%로 전체부보율의 1/3까지 확장하여 담보하고, 경상비의 자동증액이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도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하여 자동증액이 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3가지의 확장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택약관은 접근 예방(prevention of access), 공공유틸리티(케이블이나 파이프는 제외), 24시간을 초과한 공공 유틸리티의 실패, 공권력에 의한 현장 폐쇄, 확정 또는 미확정을 불문하고 공급자 혹은 소비자로 인한 손해, 제3자의 구내에 저장된 동산, 운송중인 재화가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이들 위험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표 III-7> 영국 상업종합보험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보험료	4,369	5,429	5,582	5,161	4,986	3.4
보유보험료	2,820	3,082	3,451	3,256	3,037	1.9
손해액	1,664	1,540	1,528	1,642	1,518	-2.3
사업비	862	1,034	1,146	1,216	1,169	7.9
영업손익	68	437	637	391	350	50.6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8

영국의 상업종합보험의 실적을 살펴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보험료는 49억 파운드로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3.4%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3.5억 파운드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6년 동안 기업휴지로 지급한 보험금은 1.68억 파운드로 동 종목 전체 지급보험금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휴지보험금의 지급원인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6년 지급보험금 1.68억 파운드의 88.1%인 1.48억 파운드를 화재로 인해 지급했고 나머지는 기상재해로 지급하였다.

<표 III-8> 영국 기업휴지 보험금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기상손해	291	98	109	251	163	-13.5
화재	799	672	486	791	744	-1.8
기업휴지	238	92	108	267	168	-8.3
도난	199	193	154	140	150	-6.8
계	1,527	1,055	857	1,449	1,225	-5.4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12

<표 III-9> 영국 기업휴지원인별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화재	208	81	98	220	148	-8.2
기상재해	30	13	10	46	20	-9.6
계	238	94	108	266	168	-8.3

자료 : Datamonitor, UK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2008,p.15

다. 활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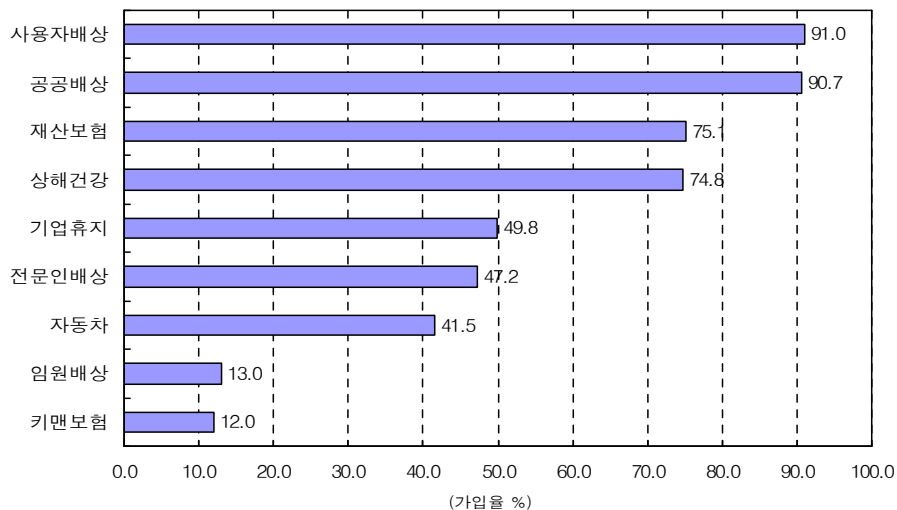
영국 중소기업의 52%는 매년 평균 22,914파운드의 기업중단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중단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⁸⁾. 또한 이들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한 주요 기술적 실패로 인한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1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휴지 등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Datamonitor(2008)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영국 중소기업의 50%

18) <http://www.tenongroup.com/Press/2008/Press080228.asp>

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용자배상책임과 공공배상책임보험은 90%이상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기업들은 기업휴지로 인한 사업 중단리스크를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4 > 영국 중소기업의 보험가입현황(2008.3)



자료 : Datamonitor(2008), Targeting SMEs in UK Commercial General insurance 2008,p.17

영국은 정부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업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사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대한 표준규격”의 제정이다. 이러한 규격의 제정을 통해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업휴지보험을 활용하여 재난대비 역량과 복원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 정부는 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2004년에 제정된 시민비상대처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규정하였으며, 지

방정부는 지역의 위험목록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민간기구인 사업연속성기구(Business Continuity Institute)는 각 산업별 사업연속성관리의 최고실무관행(Best Practice)을 선정하여 실무지침을 작성, 기업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민간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5>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의 영역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의 영역에는 위기관리, 재해복구, 시설물관리, 공급체인 관리, 품질관리, 재난관리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는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직면할 경우 경영 활동을 계속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해, 또는 손실로부터 조직의 복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합적인 전략과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표준협회는 영국 사업연속성연구소(Business Continuity Institute)와 공동

으로 2002년 사업연속성관리(BCM)에 대한 공공표준인 PAS56¹⁹⁾을 제정, 보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6년 12월에 BS 25999의 첫 번째 표준인 BS 25999-1 실행지침(Code of Practice)을 발표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BCM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S 25999-2를 제정 및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BS 25999의 제정은 사업연속성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들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의 사업연속성관리(BCM) 표준인 BS 25999는 시행령인 ‘BS 25999-1: 2006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ode of Practice’와 명세서인 ‘BS 25999-2: 2007 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사업연속성관리 표준으로, ‘BS 25999-1:2006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ode of Practice’는 BCM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절차, 원칙과 분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BS 25999-2:2007 Specification for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는 사업연속성관리(BCM)를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수행과 개선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사업연속성 리스크관리 정책을 기업휴지보험의 보급과 시장개척의 활로로 삼아 기업들에게 사업연속성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휴지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보험료 수입 순위 5위인 Zurich보험사의 경우 “Zurich Risk Engineering,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ervices²⁰⁾”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사업연속성계획의 개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감사, 기업휴업(business interruption) 모델링, 기업충격분석(business impact analysi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Zurich사의 이러한 제공서비스의 안내문은 영국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현금흐름 중단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 수 천개의 기업이 영업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한 사고를 당한 기업의

19) http://www.broadland.gov.uk/PDF/business_continuity_good_practice_guide.pdf

20) <http://www.zurich.co.uk/RiskServices/riskengineering/strategicrisk/Businesscontinuitymanagementservices.htm>

40%는 영업재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사업연속성 계획과 기업휴직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일 본

가. 시장 개요

일본의 기업휴직보험인 이익보험은 영국 등 유럽국가나 미국에 비해서 다소 짧은 7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1938년 동경해상보험 등 8개사가 영국약관을 참조하여 작성한 이익보험상품의 판매를 개시하였지만 당시는 전시(戰時)인 관계로 수요도 적었고 군수산업이 대다수인 관계로 비밀의 보호성 때문에 가입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전쟁의 종식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따라 이익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인회계사제도의 도입으로 기업회계제도가 투명하게 마련되자 보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59년에는 영국식 약관을 개정하여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1981년 현재와 같은 일본식 약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1년에 이루어진 주요 변경 내용²¹⁾을 살펴보면 1981년 이전의 이익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부대한 특약으로만 인수가 가능했으나, 전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익보험만을 가입하고자하는 수요가 나타나게 되자 이익보험(이익보험특약조항)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하여 이익보험용 화재보험보통약관이 인가가 되었다. 담보위험은 변경 전에는 화재, 폭발 및 전기적 사고에 한정하여 담보하였지만 변경된 방식에서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화재, 낙뢰, 파열, 폭발)외에 확장담보위험(전기적 사고, 풍수재, 소요·노동쟁의, 파괴행위, 항공기, 차량위험)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담보하게 되었다. 영업수익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변경 전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매출액과 생산액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고시에 약정한 보험금을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변경 후에는 사고시에 계약

21) 鈴木克彦(1982), p.131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약정담보기간 방식에 약정부보비율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미국식 이익보험(gross earning form)과의 정합성을 갖추었다.

또한 이익보험의 담보조건으로 보험의 목적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고, 담보손해도 그 목적물에 기인한 것에만 한정되었었지만 변경 후에는 이익보험만 단독으로 인수가 가능해져 동 조항은 제외되었다. 또한 담보기간에 대한 특약조항을 도입해 이익보험의 종기를 영업수익이 원상태로 복구된 시점으로 정했으며, 이의 판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의 복구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기간을 종기로 하는 특약을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10%)을 부여하였다²²⁾. 1987년 6월에는 이익보험의 요율체계를 개정하여 실시하였으며²³⁾ 현재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부대하는 형태로 이익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사업연속성관리규격을 제정하여 공급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중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 들여 손해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이익보험시장은 1998년에는 76억엔 규모의 시장이었지만 2005년의 경우 매년 23% 씩 성장하여 329억엔 규모가 되었으며 손보시장의 0.4%를 점유하고 있다.

22) 미국에서는 물적 복구를 기본으로 하여 담보기간의 종기로 하고 있으나 일본의 이익보험은 영국의 이익보험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물적 복구 후에도 영업수익 감소가 있는 경우 담보하는 방법을 채용하였다.

23) 이익보험요율과 물보험 요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물건별 적용요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물건의 경우 구조급별, 지역별, 직업할증 및 작업할증표를 독자로 하였고, 공장물건의 경우 작업시설의 화재보험 요율표에 의하여 기본요율을 산출하고, 화학공장과 기타로 구분하여 기본요율수정계수를 도입하였다. 창고물건의 경우기초요율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익보험조정계수를 개정하고 손해율 조정계수의 할인할증을 신설하였다.

<표 III-10> 일본 기업휴지보험료의 성장추이

(단위: 백만엔,%)

	1998	2000	2004	2005	구성비	CAGR
화재	1,242,505	1,134,946	1,156,444	1,203,329	15.7	-0.46
자동차	4,659,480	4,648,906	4,713,138	4,671,268	61.0	0.04
기업휴지	7,600	15,121	32,127	32,873	0.4	23.27
기타	1,810,293	1,661,193	1,726,568	1,751,293	22.9	-0.47
합계	7,719,878	7,460,166	7,628,277	7,658,763	100.0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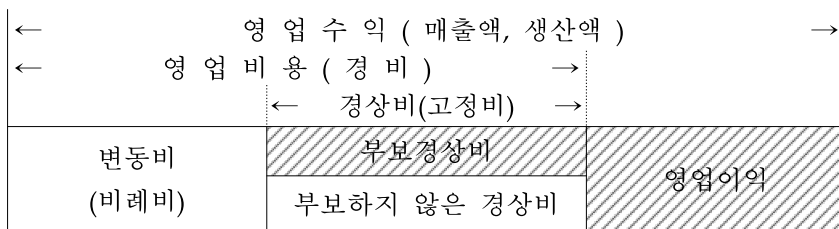
자료 : 일본 보험연구소, 『손해보험통계호』, 각년도

나. 보험상품

1) 화재보험의 이익보험담보특약

동 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용)에 이익보험특약을 첨부하여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익담보특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및 특약)의 담보위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상실이익』 과 그 손실(상실이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익감소 방지비용』 을 보상한다.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은 피보험자인 사업자의 영업수익 중 영업이익과 영업비용(경비)중 고정비의 일정 부분 즉 부보경상비를 담보한다.

<표 III-11> 일본의 상실수익의 개념



다시 말해 일본의 이익보험은 위 그림에서 사선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담보위험(화재, 낙뢰, 폭발 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결과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이 상실수익으로 보상되는 대상이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다시 보면 ①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가 없었다면 계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액과 ②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의 영업에 소요되는 영업비는 경상비와 변동비로 나뉘는데 이중 경상비를 담보한다. 경상비는 고정비라고 말하며 손해나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복구공사를 행하기 위하여 휴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관련시설을 빌리고 있는 경우 지출되는 임대료와 휴업기간동안에도 종업원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지불되는 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경상비중 계약시에 부보하는 비용을 부보경상비라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원재료나 상품구입 관련비용은 영업을 축소하면 감소하며,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부보하지 않는 경상비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계약자의 경상비와 영업이익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자료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보경상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경상비와 변동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비목명을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광열비에 대해서도 제조라인의 가동이나 공조에 사용되는 부분은 변동비이나 기본요금은 휴업하였을지라도 필요한 경상비이다. 인건비도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한 경상비이나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변동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경상비와 변동비간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이익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익률은 최근의 결산서상 회계연도에 부보항목(경상비와 영업이익 중 부보된 것)이 영업이익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말하며 상실수익액은 이익률에 수익감소액을 곱한 값에서 지출하지 않은 부보경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text{이익률} = \frac{\text{부보항목합계금액}}{\text{영업수익}}$$

$$\text{상실수익} = \text{담보기간 동안의 수익감소액} \times \text{이익률}$$

- 지출을 하지 않은 부보경상비

수익감소방지비용은 화재 등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휴업이나 영업축소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계약자들이 매출액이나 생산액의 감소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자들의 지출은 휴업이나 영업축소기간을 단축시키며 발생할 수 있는 상실수익의 크기를 작아지게 한다. 따라서 보험자들은 계약자들이 수익감소방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공사비용, 일시적 임차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2) 화재보험의 영업계속비용담보특약

영업계속비용보험(extra expense insurance)은 이익보험과 동일하게 약관구성상 화재보험보통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의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이익보험은 사고에 의해 휴업(혹은 영업축소)한 경우 상실이익과 수익감소방지비용을 지급하지만 휴업이나 영업축소를 한 결과 고객이나 거래처를 잃어 사업을 재개하여도 사고전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공성이 큰 은행이나 통신사업자 등은 이러한 피해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종은 사업을 복구할 때까지 대체시설을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과 동일한 정도의 영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영업계속비용보험은 이와 같이 영업을 휴지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영업을 유지 및 계속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익보험에서도 이와 같은 손실에 대해 수익감소방지비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는 상실수익의 경감액을 그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일 상실수익을 초과한 경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계속비용보험을 들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액은 재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계속비용의 최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보험금으로 표준영업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복구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복구기간 내에 지출을 면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가임보험특약

동 보험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 임대차업을 하는 경영자를 위한 보험으로 임대주택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의 상실된 임차비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동 보험은 이익보험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된다. 즉 동 보험은 화재보험보통보험약관(이익보험 및 영업계속비용보험용)과 같은 전용의 보통약관은 아니고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이나 주택종합보험보통약관과 같은 일반적인 약관에 첨부되어 운영된다.

동 보험의 보험금액은 월 임차료에 약정복구기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복구기간 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약정복구기간은 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다른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계약시에 약정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부당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입거상황 등을 파악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자연재해는 담보하지 않고 화재, 낙뢰, 폭발 및 잡위험에 의한 손해만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재해도 담보하는 상품이 만들어 지고 있다.

4) 점포휴업보험

동 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익보험에 비해 보다 간결하게 운영되는 상품으로 화재보험에 부대되는 상품이 아니라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금액은 1일당 조수익(매출액에서 상품 원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은 약정복구기간 내에 지출을 면한 경상비 등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동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보험자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인접물건(보험증권 기재 건물에 인접하여 있는 아케이드나 이에 대면하고 있

는 건물 등)이나 유틸리티(전기, 가스, 수도, 통신배관, 배선 등의 설비) 등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한다.

5) 기업비용 및 이익종합보험

동 보험은 이익보험과 영업계속비용보험을 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 보험으로 화재보험이나 점포종합보험과 함께 가입해야 하며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독립적인 상품이다. 동 보험은 이익보험에서 담보하는 상실이익²⁴⁾과 수익감소방지비용²⁵⁾, 영업계속비용보험에서 담보하는 영업계속비용²⁶⁾을 동시에 담보한다. 이 상품의 이익조항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익감소액의 일정 비율(계약시에 약정한 약정부보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비례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시에 계산한 보험료를 청구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에 영업수익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는 개념이다.

이익보험이 화재, 낙뢰, 파열 및 폭발을 담보하는 보험인 것에 비해 동 보험은 종합담보형태(all risk)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동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침수 손해, 노동쟁의와 같은 파괴적 행위 등의 위험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확장담보특약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보험의 목적에는 점포휴업보험과 같이 인접물건이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발적 기업휴지손해(CBI)까지 담보하고 있다. 동 보험의 상품체계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24) 상실이익은 사고가 발생한 결과 영업을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 중 경상비와 사고가 없었으면 계상될 영업이익의 합을 말한다. 계산은 매출액의 감소액×계약시에 정한 약정부보비율-담보기간 내 지출하지 않은 고정비×약정부보율/이익율에 의거 한다.
 - 25) 수익감소방지비용은 수익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 26) 표준영업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소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복구기간 내에 생긴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초과한 부분을 말한다.

<표 III-12> 일본의 비용 이익종합보험 담보체계

구 분	기업휴지손해(BI)	우발적 기업휴지손해(CBI)
담보 위험	화재, 파열 및 폭발, 낙뢰, 풍재·수재·설재, 소요 등 집단행동, 급배수설비의 누출, 외부로부터 물체의 낙하 등, 도난, 파손 등	유틸리티 설비 : 보험의 목적과 배관 또는 배선에 의하여 접속되어 있는 해당법률에 근거한 전기사업자, 가스사업자, 열공급사업자, 수도공급사업자, 공업용수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보상 손해	상실이익 수익감소방지비용 영업연속비용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유틸리티 설비의기능이 정지 또는 저해되어 전기, 가스, 열, 수도의 공급 또는 전신·전화의 중계가 중단됨으로써 생긴 휴업손실 보상
면책	고의, 자연마모, 분실망실, 토사붕괴(특약담보)	설비능력을 초과사용, 계약에 의한 해제, 노동쟁의, 오염, 갈수, 물부족 등

자료 : 동경해상 홈페이지(<http://www.tokiomarine-nichido.co.jp/hojin/zaisan/rieki/index.html>)

참고로 동 보험의 보험료수준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연간 영업수익이 120억인 보험계약자가 기업휴지담보에만 30%의 약정담보율($(\text{영업이익} + \text{경상비}) / \text{영업수익}$)에 0.06%의 요율 수준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은 36억엔이 되며, 이를 100% 가입하고 담보기간을 12개월로 계산할 경우 보험료는 200만엔이 된다.

6) 초비즈니스보험

최근 일본의 보험사들은 기업들의 영업환경이 기업내외부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과거의 일반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으로는 기업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을 담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보험상품인 초비즈니스 보험은 현재 일본에서 동경해상²⁷⁾을 비롯한 다른 손보사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27) http://www.tokiomarine-nichido.co.jp/hojin/jigyoo/cho_business/index.html

<표 III-13> 동경해상 초비즈니스보험 담보체계

구 분	기본담보위험	선택담보 위험(보험상품)
담보 위험	재물손해담보: 건물, 설비, 집기, 운송중 상품제품 휴업손해담보: BI, CBI를 포괄 담보 재상책임보상: 사업활동관련 배상책임 상해보상: 취업중 임직원 상해 산재초과보상: 산재시 산재초과손해 담보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지진보험
컨설팅 서비스	IT 컨설팅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건적을 즉각적으로 실시	

동 보험은 지금까지의 보험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보험가입대상 업종을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업종별로 리스크특성에 맞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건설업과 운송업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상조항, 상해보상조항, 산재초과보상조항, 비용보상조항을 제공하며, 소매업의 경우에는 재물손해, 휴업손해, 배상책임보상손해, 산재초과보상, 비용보상담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기업이 노출된 모든 리스크에 해당하는 보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시 효율적인 보상을 받아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보상으로서 업종 특유의 리스크에 대해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으로 이는 기업에 있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브랜드 라벨비용, 원재료 납품지연손해, 제조업의 리콜비용,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상해치료비용 등을 신속하게 담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네 번째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상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독자적인 할인제도(포괄담보할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별도할인) 및 계약절차와 관리가 간단하다는 점이 있다.

동 보험의 휴업보상 담보는 계약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설, 인접물건, 유틸리티설비(utility risk), 공급자의 물건(supplier's risk)에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결과 계약자의 영업이 휴지 또는 저해되어 생긴 손실을 포함한다. 휴업손해의 보상은 1일당 지불액을 설정하고 휴업일수 대로 지급하며 보상기

간은 최대 12개월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휴업손해이외에도 영업계속비용을 1일당 지불액의 30배를 한도로 담보하며, 휴업이 5일 이상 지속되고 사고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재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1사고 당 10만엔을 보상한다.

다. 활용현황

일본에서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을 이용한 휴업손실 리스크관리는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초기에 도입된 기업휴지보험의 활용이 미진하자 현재 일본 보험업계에서는 독립적인 기업휴지보험 상품담보가 가능하게 하거나 담보방식을 달리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본식 이익보험이 개발되기 전의 기업휴지보험의 시장에서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었다. 동화손해보험회사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은 화재보험 계약건 중에서 6.2%만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의 가입율 20%, 독일의 50%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며 이러한 원인은 보험회사들이 기업휴지보험의 보급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보았다²⁸⁾. 이와 같은 저조한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송 일(1997)은 이익보험시장을 손해보험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비용이익종합보험, 초비지니스보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익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실적통계도 비용이익보험(pecuniary loss)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업연속성관리(BCM) 기준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등이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초기의 사업연속성 기준은 2005년 3월에 경제산업성에서 IT 사고를 상정한 『사업연속계획 책정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졌고, 2005년 8월에는 내각부의 중앙방재회의에서 지진까지를 포괄하고 생명안전, 휴업손실 등 2차 피해까지를 규정한 사업연속계획책정가

28) 송일(1997), p.183

이드라인 제1판이 제시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소기업 BCP 책정운용지침』이 마련되었다²⁹⁾. 일본 중소기업청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빈발하는 지진, 태풍 등 재해로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사업중단이 되거나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들이 이러한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사업연속성관리 노력에 따라 기업들은 적극 호응하여 자발적인 사업연속성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2007년 10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29%는 이미 사업연속성계획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1%는 구축 중에 있으며 32.5%는 구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업연속성관리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⁰⁾. 일본 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보면 지진이 95.8%, 화재 등으로 인한 자사설비 사고나 고장이 66.7%, 자연재해가 56.4%, 조류 등 신형인플루엔자가 25.5%, 테러 등이 2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의 70.9%가 재해를 입게 될 경우 자사의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수 있기 때문에 사업연속성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응답했고, 15.2%의 기업은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추진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기업휴지보험이 정제³¹⁾된 손해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보재팬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

29) 일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http://www.chusho.meti.go.jp/keiei/antei/060217bcp_koukai.htm)

30) 株式會社野村総合研究所, 「BCP(事業継続計画)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BCP策定済みまたは策定中の企業は6割超~, NEW RELEASE, 2007.11.22(<http://www.nri.co.jp/news/2007/071122.html>)

31)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일본 손해보험시장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불황으로 인해 화재보험을 비롯한 자동차보험의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최저금리의 지속으로 위험보장과 투자 장점이 있었던 장기보험도 그 성장여력을 잃게 되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업의 사업연속성관리 도입정책과 연계하여 기업휴지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재해복구대책에 대한 관련 상품을 상세하게 비교 설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사업중단에 대한 손해대책으로 이익보험, 영업계속비용보험, 올리스크(all risk)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 보험개요, 가입조건, 담보하는 손해 등이 비교되어 있다³²⁾.

이러한 기업휴지보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27일자 아시아 보험리뷰지³³⁾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일본 국내 대형손해보험 5개사의 보험료수입은 이익보험의 수요에 힘입어 200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전년에 비해 13%나 증가한 것으로 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들의 기업휴지보험 가입율은 10%~20%³⁴⁾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국, 독일 등 유럽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BCP책정운용지침 안내자료(http://www.chusho.meti.go.jp/bcp/contents/level_a/bcpgl_05a_2_2.html)

33) ASIA INSURANCE REVIEW Vol III Issue 5, "이익보험 수요확대로 13% 증수", 2005.1.27

34) 杉野文俊(2007), p.77